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영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54 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유영하·이헌승·김기웅

권영세 • 우재준 • 강선영

이인선 • 박성훈 • 임종득

김정재 • 박덕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(塡補)받을 수 있으나,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, 법원이 영업비밀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,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,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도 위제도들을 도입함(안 제35조의2제4항).
- 나. 위 가.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(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2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제4항 중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 및 제115조"를 "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"로 한다.

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제2항의 죄는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40조 중 "제39조 제1항 또는 제2항"을 "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35조의2(손해배상책임) ① ~ 제35조의2(손해배상책임) ① ~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| ---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부터 제11 에 관한 법률 | 제110조 및 제 5조까지----. 115조를 준용한다. 제39조(벌칙) ① (생 략) 제39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 <신 설> 이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2 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 <신 설> ③ 제2항의 죄는 제35조의2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| 제112조제1항에 따 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②·③ (생 략) 4·5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

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	제40조(양벌규기
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	
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	
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	
관하여 제39조 제1항 또는 제2	제39조제
<u>항</u>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	
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	
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	
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	
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	
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	
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	
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	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l .	

제40조(양벌규정)		
<u>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</u>		